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9,400,000	10,182,000
일반회계	303,500,000	9,105,000
특별회계	35,900,000	1,077,000
기타특별회계	35,900,000	1,077,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706,356	501,191
수질개선특별회계	11,409,000	342,2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99,244	23,97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05,101	27,1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065,115	91,953
치수사업특별회계	2,808,409	84,252
기반시설특별회계	6,775	20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81,09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회계년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